

심약 사례 연구 - 경상심약을 중심으로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마루요양병원 한방 2과

A Study on Simyaksalye – Focused on Gyeongsangsimyak

Hun-Pyeong Park

*Dept. of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Korean Medicine Second Department, Maru Geriatric Hospital*

Simyak (Finding Herbs) was a medical bureaucracy appointed direc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province. Simyaksalye (Casebook of Finding Herbs) was a 19th-century manuscript dealing only with Simyak.

This study has outlined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This article reveal facts which include :

- 1) The year of completion of this document was after December 24, 1873. However, the contents of the text were mixed with different writing periods in the 19th century.
- 2) The author of this document was assumed to be a member of Jeonuigam. Jeonuigam-based expressions appear in the content.
- 3) Simyak's main focus was not on contributing to local health care, but on the procurement of goods for central care. Much of Simyaksalye's content were on medicines and goods facts and their benefits. If Simyak's role was important in local medical cadet education, then there would have been rules related to it.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Simyaksalye, Simyak, Gyeongsanggamyeong, Jeonuigam

I. 서론

審藥은 종9품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하여 상시적으로 지방으로 파견한 유일한 의학 관료이다. 심약 직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태조 때의 醫學教授가 태종 때 醫學教諭官으로 다시 1460년대 후반에야 심약으로 됨이 확인되었다.¹⁾ 심약은 전의감과 혜민서의 취재를 통하여 관찰영, 병영, 통영 등에 파견되었는데 정원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약재진상과 土庶軍兵의 치료, 수령 감찰, 지방의학 교육 등의 업무를 맡았다.²⁾ 『審藥事例』

는 19세기 조선의 행정관청에서 다수 만들어지던 事例류 문건의 하나로 기존 심약 관련 연구에서도 소개되어 일부 다루어지고,³⁾ 원문에 대한 역주도 이루어졌으나,⁴⁾ 문헌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없었다.

본고를 통해 『심약사례』의 내용을 개괄하고 내용을 살펴서 고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심약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과 중앙 의약을 연결되는 軸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약사례』에는 25종의 심약에 대해 기록되었지만 대구의 경상감영 심약 내용이 가장 상세하다. 다른 심약의 경우 급료만 기록되는 등 관련 내용이 소략하여 실제 양상에 대해 재구성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원문 분석을 경상심약에 초점을 두고 문헌의 성격을 규명할 경우에만 다른 심약 관련 내용도 활

접수 ▶ 2019년 10월 21일 수정 ▶ 2019년 11월 25일 채택 ▶ 2019년 11월 22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249 마루요양병원 진료과장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 1)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외사학회지. 2015;28(2):59-72.
- 2) 박훈평. op. cit. p. 64-66.
- 3) 박훈평. op. cit. p. 66-67.
- 4) 전의감 편. 박훈평 역. 『역주 심약사례 상하』. 서울:피플. 2015:상 8-116, 하 8-114.

용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특성상 조선의 특정 시기 상황만을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심약만을 다룬 유일한 현존 자료라는 점에서 의약제도 연구에 있어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II. 본론

1. 서지 사항

1) 형태



그림 1. 『심약사례』 표지⁵⁾

불분권 1책의 필사본으로, 표지의 표제는 “審藥事例單”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유일본으로 소장중이다(청구기호 한古朝68-36). 표지에 책의 작성 연도나 필사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없다(그림 1). 전체 분량은 77장 겹장으로 필사지에는

별도의 계선 등이 없고, 책의 크기는 33.4×22.0 cm이다.⁶⁾ 필사된 원문 글자의 行列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규칙은 없다. 조선 전통 제책법인 五針眼釘法으로 제책되었다.

2) 내용의 구성사항

본 문헌은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서문 역할을 하는 完議와 여러 심약 종류별로 세목에 따른 본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完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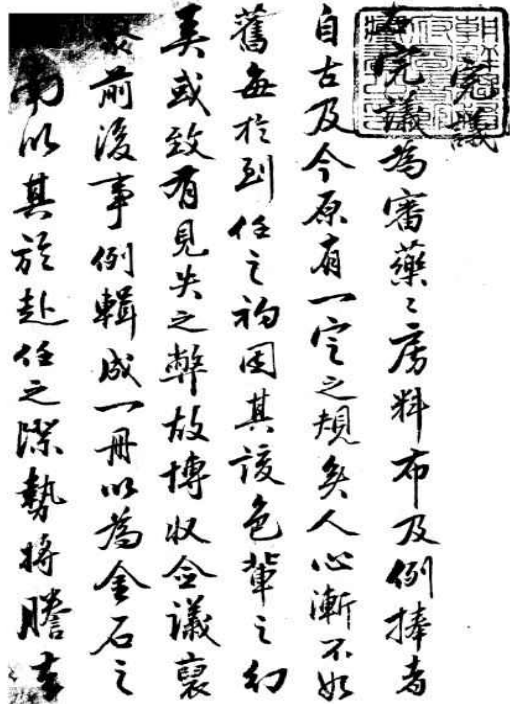


그림 2. 『심약사례』의 “完議” 첫 면⁷⁾

完議는 의논하여 합의된 것을 서로 지키기로 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 『심약사례』에서는 전체 내용의 서문 역할을 한다. 초서로 된 완의 내용(그림 2)을 脫草를 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아래의 完議는 審藥과 藥房의 料布⁸⁾ 및 例捧⁹⁾에 관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제공 이미지

6) 책의 크기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에 의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http://www.nl.go.kr/nl>)

7)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 제공 이미지

8) 달마다 지급되는 돈과 면포

9) 전례에 따른 봉입

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원래 일정한 규례가 있었지만, 人心이 점차 과거만 못하게 되었으니, 到任 초기마다 그 직무를 맡은 무리들의 幻弄¹⁰⁾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는 보고도 잃어버리는 병폐에 이르는 까닭에, 널리 논의를 많이 듣고 이런 저런 사례를 모아서 한 책으로 합하여 정리하였으니, 이것으로 金石처럼 변함없는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赴任할 때 형세 상 대저 騰本 한 뒤에야 携貳¹¹⁾의 탄식을 면할 수 있습니다. 騰出 때에는 後任官과 함께 관아에 나아가 따로 베기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藏養하고 특별하게 이를 맡아 지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서로가 업무에 태만한 폐단이 있거든, 後任官이 마땅히 시행한 후에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惕念하면서 쫓아 지켜야 할 것입니다.¹²⁾

(2) 본문

본문은 경상감영의 내용이 상세하여 전체 1/3 분량을 차지하며 총 25종의 諸道審藥과 藥房¹³⁾이 수록되었다. 경상감영의 내용이 가장 많다. 경상감영, 충청감영, 전라감영, 황해감영의 4종의 조목에만 다시 세목이 존재한다. 세목이 존재하는 4종의 조목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 慶尙監營(25세목)¹⁴⁾

二月令封餘邑, 二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 二月令各邑土產雜種秩, 十月令, 四月小令, 五六月小令, 七八月小令, 十月令封餘邑, 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 臘令, 每朔料布帙, 遞等時, 到任後本府進排式例, 到任後下人例下秩, 二月大令後下人例下秩, 小令後下人例下秩, 本堂下人給料秩, 藥院廳中及該色應例, 營門封餘蓼價區處秩, 本堂下人等二十月大令時封餘邑醫生處收捧分處式, 本堂通引大令時會所例推, 四等小令時會所例推, 二十月令後京奴子應出例捧秩, 二月白清進上 등¹⁵⁾, 癸未七月日因內醫院關申飭貢蓼各邑關文

10) 교묘한 꾀를 부려 농락함.

11) 서로 어그러져 믿지 않음.

12) ○ 右完議爲審藥藥房, 料布及例捧者. 自古及今, 原有一定之規矣. 人心漸不好舊, 每於到任之初, 因其該色輩之幻弄, 或致有見失之弊, 故博收僉議, 稟聚前後事例, 輯成一冊, 以爲金石之典. ■以其於赴任之際, 勢將騰本然後, 可免携貳之歎. 其於騰出之時, 後任官同爲赴衙, 使之別可騰去, 卽地藏養, 各別典守, 是矣. 好是之後, 各有不勤之弊, 則後任官斷當, 施以離行也. 以爲惕念遵守之地焉. 원문에서 밑줄 친 “典”은 관독불가자이나 당대의 관용적 표현이므로 보충하였다. ■은 관독불가자이다.

13) 종친부, 오군영 등에 배치된 의관 직임의 종류로 무품관이다.

14) 세목별 내용은 본문 다음 장에 상세하게 논하였다.

15) 세목에서 따로 세목이 없는 경우 문장 첫 단어에 “- 등”을 삽입했다.

16) 지역 등의 이름으로 붙은 별칭인 이름을 원래대로 바꾸면 남병영은 함경남병영, 북병영은 함경북병영, 진주병영은 경상우병영, 울산병영은 경상좌병영, 청주병영은 충청병영, 황주병영은 황해병영이다.

○ 忠淸監營(7세목)

禮庫 등, 到任初下人等帖下, 到任初本府例納, 月令例納, 三十月令兩等令納時下人等帖下, 三十月兩等令納內局所費, 傳掌大櫃 등

○ 全羅監營(3세목)

四月受料, 到任時雜物記, 都房子 등

○ 咸鏡監營(5세목)

營庫 등, 到任初修理, 遞等條, 七月令, 『節目癸未』

세목이 따로 없는 심약 21종은 다음과 같다.¹⁶⁾

○ 黃海監營 ○ 平安監營 ○ 平安兵營 ○ 江原監營 ○ 南兵營 ○ 北兵營 ○ 宗親府藥房 ○ 統營 ○ 江華 ○ 晋州兵營 ○ 蔚山兵營 ○ 淸州兵營 ○ 全羅兵營 ○ 黃州兵營 ○ 議政府藥房 ○ 禮曹藥房 ○ 忠勳府藥房 ○ 內局月令二窠 ○ 刑曹月令一窠 ○ 司憲府月令一窠 ○ 濟州

3) 책의 편자와 작성 시기

(1) 편자

본문에서 本府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관청에 대한 내용에서 등장하므로 원문서의 작성자는 여럿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상감영” 내용 중에서 「到任後本府進排式例」에서 “本府”라는 용어를 쓴다면 작성자가 경상심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체 문헌을 보면 경상심약 뿐 아니라 여러 제도 심약과 약방 등 의관 외임직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외임을 差送하였던 기관의 인물 즉 전의감 내지 혜민서 관련 인물이 여러 관서의 문서를 모아 최종적으로 책을 편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내의원에서 약을 제조하는 일을 관장하는 내국월령의를 설명하는 「內局月令二窠」항목에서 “합하여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가 醫監(전의감) 몫이다.¹⁷⁾”라고 하였다. 내국월령의는 모두 4명으로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각 2명이 分差되는데 이 설명으로 보면

전의감 입장에서만 기술되었다. 따라서 본 문헌의 편자는 전의감 소속의 인물로 봄이 타당하다. 필사자의 경우 완의를 제외하면 동일한 필적으로 문헌 내내 유지되므로 동일 인물로 보인다.

(2) 작성 시기

완의 말미에 “병진년 9월 9일”이라는 기록이 있다. 심약 제도는 1895년 혁파되므로 그 이전이어야 하고, 본문 전반에 純祖 관련 내용이 나오므로 순조의 즉위년(1801)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문 내용 중에 고종 때의 기록이 있어서 책의 저술 시기 판단에 이견이 있었다.¹⁸⁾

完議의 작성 시기는 1801년과 1895년 사이의 병진년으로 1856년(철종 7)이다. 다만 완의 작성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본문 내용이 덧붙여졌고 전체 문헌 편제의 완성은 1873년(고종 10) 12월 24일 이후이다. 그 증거로 “경상감영 계미년 관문 말미¹⁹⁾와 “함경감영” 본문 첫 부분,²⁰⁾ “남병영” 본문 첫 부분,²¹⁾ “북병영” 본문 첫 부분²²⁾의 4곳에서 1873년 12월 24일에 행해진 일이 기록되었다.

2. “경상심약” 내용 개괄

본문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개괄하였다. 원문에는 25종의 심약 종류가 나오는데, 경상감영 심약의 내용이 가장 상세하며 다른 심약 관련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慶尙監營”이란 제목 하의 내용은 경상도 대구에 있던 경상감영에서 근무하는 중 9품 경상도심약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상심약의 별칭은 嶺營審藥이다. 경상심약 관련 세목은 약재 진상 관련된 항목과 기타 항목, 말미에 실린 關文²³⁾으로 나눌 수 있다.

1) 약재 진상

경상도심약은 약재진상 업무를 하므로 이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경상도 산출 인삼은 羅蓼이라도 부르며²⁴⁾ 주요 약재 진상품이었다. 나삼의 품질은 전국의 인삼 중에서도 최고로 가장 고가였다.²⁵⁾ 2, 10월은 大습이고 4, 5·6, 7·8, 12월은 小습이었다.²⁶⁾ 음력 기준이므로 2월과 11월이면 봄과 가을이다. 약재 진상 관련 세목은 총 10항목이다.

(1) 대령²⁷⁾

2월과 10월 대령의 경우 封餘邑, 各邑作紙草紙魚秩, 各邑土產雜種秩의 각 3세목으로 총 6항목이다. 소령에 비해 대령에는 공납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다. 대령은 인삼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2월령의 봉여고을(二月令封餘邑)」은 영산(靈山) 등 12고을에 부여된 인삼 봉여에 대한 기록이다.²⁸⁾ 17세기 대동법의 실시 이후 경상도 貢蓼은 대동법 적용 대상이 되어 현물 납부가 아니라 화폐로 납부되었다.²⁹⁾ 봉 항목에서도

17) 【合四窠內, 二窠醫監.】

18)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제를 보면 완의 작성을 전체 문헌 내용과 결부시켜 1916년의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오류이다.

19) “丙寅二月, 仍傳教減一斤, 癸酉十二月二十四日, 領相李裕元, 筵稟復舊.” 각주 30 참조

20) “<5월부터 받는다. 병인년(1866 고종3) 4월 전교로 인하여 鹿茸 8對를 줄였다가 계유년(1873 고종10) 12월 복설하였다.> 【自五月受. 丙寅四月, 仍傳教, 減鹿茸八對, 癸酉十二月復設.】 『승정원일기』 고종 3년 4월 13일, 고종 10년 12월 24일 기사를 통해 확인. 본고에서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승정원일기 DB(<http://sjw.history.go.kr>)에서 원문 검색

21) “<병인년(1866 고종3) 4월에 傳教에 의하여 녹용 3대를 줄였다. 신미년(1871 고종 8)에 本營에서 啓請하여 또 2대를 줄였다. 계유년(1873 고종10) 12월에 원래대로 복구했다.> 【丙寅四月仍傳教, 減鹿茸三對. 辛未本營啓請, 又減二對. 癸酉十二月還復.】 『승정원일기』 고종 3년 4월 13일, 고종 10년 12월 24일 기사를 통해 확인

22) <병인년(1866 고종3) 4월에 傳教에 의하여 녹용 3대를 줄였다. 11월에 傳教에 의하여 審藥을 혁파했다. 계유년(1873 고종10) 12월 24일에 영상 李裕元이 啓請하여 다시 두었다.> 【丙寅四月, 仍傳教, 鹿茸三對. 十一月, 仍傳教審藥革罷. 癸酉十二月二十四日, 領相李裕元, 啓請復設.】 『승정원일기』 고종 3년 4월 13일, 고종 10년 12월 23일, 12월 24일 기사를 통해 확인

23)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 양식

24) 『내의원식례·京外貢藥材』

25) 1790년의 각지 인삼 값을 비교하면 금 한 푼이 돈으로 6전인데, 나삼 한 푼은 4냥, 江蓼(관서, 강원, 강계삼) 한 푼은 1냥 4전, 北蓼(관북삼) 한 푼은 1냥이었다.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3월 10일 경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illok.history.go.kr>)의 내용 참조

26) 대령은 심약이 직접 領納하는 것이고 소령은 심약이 아닌 사람을 시켜 들었다. 『내의원식례·京外貢藥材』 참조. 1778년 중수된 헤민서 관청지 『해국지』와 1810년 경의 내의원지 『내의원식례』를 보면 경상심약은 18세기 중반 이후 대령, 소령의 변화가 없었다.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15;28(2):66-67.

27) 본고의 결론을 보면 대령과 소령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으나, 심약의 약재진상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글의 분량 상 독자의 가독성을 돕기 위해 따로 구분하였다.

28) 봉여란 본래 중앙에게 진상하고 남은 물품을 국왕이 벼슬아치들에게 회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은 관료들에게 지급될 물품이 상납 과정에서 봉여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현물 납부의 기록은 없다.

「2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二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³⁰⁾」은 安東 등 71개 고을이 수록되었는데, 4會所³¹⁾로 나누어 첫 묶음은 안동부 등 22개 고을, 두 번째 묶음은 경주부 이하 19개 고을, 세 번째 묶음은 진주목 이하 20개 고을, 마지막 묶음은 상주목 이하 11개 고을이다.

「2월령 여러 고을의 토산잡종에 대한 질(二月令各邑土產雜種秩)」은 경주 등 20개의 고을의 토산 잡종을 설명한다(표 1). 토산잡종은 약재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토산 물품들을 망라한다. 예를 들어 거제는 나막신 1부, 예천은 무명 2필 식이다. 그런데 약재가 아닌 공산품의 경우 대개 값으로 내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진주는 서랍 1개를 대신하는 값 3냥, 용천은 전체가 촘촘한 탕건 1부 값으로 5냥 식이다. 이들 물품은 중앙의 의료관서에서 사용될 물품들로 청도의 “죽력고 병 값 1냥”처럼 세세한 물품들이 등장한다. 즉 심약은 단순히 약재만 진상하여 올린 것이 아니라 의료관서에서 사용되거나 의료관서 소속 원들에게 지급될 물품도 같이 지방에서 거두었다.

표 1. 嶺營 2월령 토산잡종 중 식품과 약재

고을 명	약재 종류
경주	대구 1마리 값 2전
청도	黃栗 ³²⁾ 1봉
밀양	黃栗 1말
동래	진피 1근
울산	대구 1마리, 김 1퇘, 전복 1관
칠곡	썩 1同
문경	石淸 1되
진보	꿩 1마리 값인 3전

「10월령(十月令)」은 내용상 10월령의 “여러 고을의 토산잡종에 대한 질(各邑土產雜種秩)”이다(표 2). 해당 고을은 따로 기록된 울산 등 8개 고을과 동일하다고만 기록된

18개 고을을 합쳐 모두 26개이다. 그런데 원문 순서에 있어 10월령에 관한 내용이 본문이 「7·8월령」 이후에 다시 나오며 계절 순서대로 보면 2월, 4월, 5·6월, 7·8월, 10월 식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순서적으로는 오류이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같은 면에서 2월령이 바로 이어지고 있고 뒤에 나오는 「10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에서도 앞에 나왔다고 언급하므로³³⁾ 제책 과정상의 오류는 아니고 처음 필사될 때부터 이 순서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본문에선 7·8월령 뒤에 나오는 10월령 관련 내용을 이 항에서 함께 논한다.

표 2. 嶺營 10월령 토산잡종 중 식품과 약재

고을 명	약재 종류
울산	전복 1관, 김 1퇘, 넙치 1마리
영덕	김 5퇘, 대게 1개
남해	櫃子 2되, 梔子 2되
문경	석청 1되, 찹가루 5되, 산나물 2두름

「10월령의 봉여 고을(十月令封餘邑)」은 영산(靈山) 등 14고을에 부여된 인삼 봉여에 대한 기록이다. 2월령에 비해 2고을(남해, 거제)이 추가되었다. 「10월령 여러 고을의 작지, 초, 지어에 대한 질(十月令各邑作紙草紙魚秩)」은 安東 등 71개 고을이 수록되었는데, 4會所로 나누어 묶음별 고을은 2월령과 동일하다. 이 세목의 내용 말미에 토산잡종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경과 울산만 다르다 하였다.

(2) 소령

소령은 대령과 다르게 월령 내에 세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내용도 소략하다. 소령은 초, 지어대, 토산잡종 등의 내역이 함께 기술된다. 소령 관목 세목은 모두 4항목인데, 9월과 11월은 대령도 소령도 아닌 기간으로 공납이 없다.

29) 이러한 방식을 “受價質納”이라 한다. 쌀, 돈으로 대신 건여 그 값을 공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기관에 필요한 공물을 조달했다. 경상도 동래부는 일본의 인삼 수입 때문에 전국적인 인삼 무역의 거점 중 하나였다. 문광균, 「18세기 강계지역 공삼제의 운영과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11;57:166-167. 17세기 이후 일본에서의 인삼 수요가 급증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조선의 인삼 인공 재배는 이 시기에도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개 자연산 산삼에 의존하여 공급량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도쿠가와 막부는 인삼재배를 위해 인삼 종자와 인공 재배 기술을 조선으로부터 도입한다. 정성일, 『조선 후기 대일무역』, 서울:신서원, 2000:255-299.

30) 作紙는 관청에서 문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종이 값으로 거두는 세금, 草는 진상 물품을 운반한 마부나 운송한 사람에게 馬草代를 지불하는 금액, 紙魚는 大同 이외로 꿩, 닭 등의 물품을 공상하는데 종이나 물고기로 대신하는 값이다. 秩은 문서질 정도의 의미이다.

31) 회소란 도내 각 군현 중 都會로 지정된 특정 읍의 처소를 말한다. 주로 큰 읍에 설치되었지만 행정적 필요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進上都會는 지정된 군현에서 진상되는 물품을 모아 관찰사의 감독 하에 監封되었다. 관찰사 등이 정하는 差使員 등이 실제 수송을 하고, 관찰사를 대신하는 判官이나 도사가 감독하는 측면에서 각 군현에서 개별적으로 상납하는 공물과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약재진상의 주취는 중앙에서 파견된 심약이다.

32) 말리어서 껍데기를 벗긴 밤, 건율

33) “10월령 여러 고을의 토산잡종은 모두 2월령과 같으나, 단지 울산과 문경만 다르다. 이는 2월령에서 살펴보았으니, 해당 순서를 보시오. 十月令各邑土產雜種, 並同二月令, 而惟蔚山聞慶所異. 此則二月令考, 見次.”

소령에서 5·6월과 7·8월은 함께 묶여있으며 각각 공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개월 기간 동안의 공납으로 실제 공납은 6월과 8월에 이루어졌다.

「4월소령(四月小令)」에는 경주 등 19개 고을, 「5·6월소령(五六月小令)」에는 37개 고을, 「7·8월소령(七八月小令)」에는 24고을, 「12월령(臘令)」에는 13고을이다.

「7·8월소령(七八月小令)」내용에 “약정(藥情) 2냥”이 나오는데 약정이란 藥情價를 말하며 상부기관에 약재를 진상하면서 건네는 人情이다. 관례적인 뒷돈을 명문화하여 사례에 수록한 셈이다. 납월(12월)의 진상은 꽃감과 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 嶺營 소령 토산잡종 중 식품과 약재

고을 명	약재 종류
울산	전복 1관, 김 1툇, 대구 1마리(4월)
동래	후추 1근(7·8월)
칠곡	향쭈 1동(7·8월)
의령	꽃감 1첩, 柿雪 ³⁴⁾ 8냥(12월)
거창	꽃감 1첩, 시설 12냥 5돈(12월)
진주	꽃감 1첩(12월)
안의	꽃감 1첩, 시설 10냥 5돈(12월)
함양, 산청	꽃감 1첩, 시설 6냥 5돈(12월)
삼가, 함안, 단성	꽃감 1첩, 시설 5냥 5돈(12월)
罽 <small>會</small> ³⁵⁾	꽃감 10첩(12월)
합천, 초계	꽃감 1첩, 시설 7냥(12월)

2) 기타

심약이 받는 급여, 의례 때 받는 샅 등 심약 관련한 항목과 하인 및 수하에 대한 샅 규정 등으로 총 15항목이다.

약재 진상에 관여하는 심약의 경우에 이 소임이 다른 업무보다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령과 소령 약재 진상에 직접 관련된 세목이 10항목이고 기타 규례에서도 15항목 중 10항목이 이와 관련되어 총 20항목이나 되어 증명된다. 만약 심약의 소임 중에 의생교육 등이 중요했다면 이와 관련된 규례 등이 기록될 것이다. 즉 정례적인

의생 교육이 있었다면 이를 치르는 비용이나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의생에 대한 상급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상심약이 아닌 다른 심약 관련 내용에서도 이러한 규례는 없다.

이로서 추정해보면 심약은 의생교육 등을 통해 지방 의료에 공헌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중앙의료에 필요한 물품(약재 등)의 조달이 주된 소임이다. 부수적으로 약재의 진상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고위직 관료(관찰사, 병마절도사 등)의 치료 및 군의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진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병영심약에게 있어서 軍兵의 치료가 핵심적인 업무겠지만 이 또한 국가의 군사력과는 관련되지 지방의약과는 상관이 없다.

즉 조선 초기 심약의 전신인 의학교육관이 가졌던 중앙의 의학을 지방에 전파하는 “教授”로서의 기능은 조선 후기 퇴보하였다. “審藥”이라는 명칭 변화도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다. 조선후기 심약의 운영과 실태에 관한 자료는 『승정원일기』 등에 단편적으로 나타날 뿐으로 『심약사례』는 가장 상세한 일차자료이다. 『승정원일기』 1711년(숙종 37) 4월의 기사를 보면 약재채취시기에 심약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의생과 藥漢 등에게 채취와 乾正法을 가르치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³⁶⁾ 이러한 교육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상례화 되었다면 분명 『심약사례』에도 언급되었을 것이다.³⁷⁾

(1) 심약의 급여

심약은 조정에서 임명한 종9품관이지만 녹봉이 없는 無祿官이다. 녹봉이 없다는 말은 국가 재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며, 소속된 해당 관청에서 생활물품과 급여를 받았고 특별 소임을 하면 이에 따른 대가를 제공받았다.

「달마다 요포에 대한 질(每朔料布帛)」은 경상심약이 달마다 받는 급여에 대한 내용이다. 호방, 군수고 등 다양한 감영 하부 조직에서³⁸⁾ 소용물품 등을 지급 받았다. 심약의 급여 체계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³⁹⁾

34) 꽃감이 마르면서 생기는 하얀 가루로 내부의 당분이 흘러나와 생긴다. 비변사에서 간행한 『市弊·六隅塵女人』을 보면 시설은 중천부, 의정부, 중추부, 중훈부, 기로소에서 전약을 만들 때 大藥藥에 넣었다고 한다. 비변사 편. 조영준 역. 『시폐』. 서울:아카넷. 2013:192.

35) 진주회소

36)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4월 14일 (임신) 기사. “朝家之分遣審藥於八道者, 意固有在, 若於採取之節, 躬往列邑, 醫生·藥漢輩, 教以採取乾正之法, 則封進藥材, 亦必有勝於前, 以此分付, 何如? 上曰, 所達好矣, 依此分付, 可也.” 乾正法이란 약재를 올바른 방법으로 말리는 것을 의미한다.

37) 따라서 박훈평. op. cit. p. 67에서 심약의 지방 의학교육이 조선후기에도 주요한 업무의 하나로 본 것은 오류이다. 본고를 통하여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38) 감영의 各庫와 같은 하부 조직은 상업 활동을 통하여 감영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 김무진. 「조선후기 경상감영에 관한 연구」. 학림. 2015; 36:125-179.

39) 본고에서 따로 논하지 않지만 다른 심약의 경우도 정해진 규례에 따라 같은 식으로 지급 받았다. 다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찹쌀 1섬<시장 가격에 따른다.>, 還米 2섬 12말 5되 <말마다 2전씩이 규례이다.>, 콩 12말, 좁쌀 12말 6되, 팔 1되<이상은 시장 가격에 따른다.>, 반찬값 4냥 5전, 넓치(廣魚) 4마리를 대신하는 값은 1냥. 명태 9두름을 대신하는 값은 9전, 밀가루 1되 5홉을 대신하는 값은 3푼<찹쌀 이하는 戶房.>, 미역 1단을 대신하는 값은 1전 3푼, 흰 소금 2되 4홉을 대신하는 값은 3푼, 참기름 2되 9홉을 대신하는 값은 7전 3푼<미역 이하는 창고지기다.>인데 이상은 營庫에서 낸다. 朔布 2필을 대신하는 값은 6냥이다.<軍需庫.> 땀나무 60束을 대신하는 값은 3냥이고<속마다 5푼씩이 규례이다.>, 숯 1섬을 대신하는 값은 4전이다.<말마다 2푼씩이 규례이다. ○ 이상은 영선고.> 말 먹이 풀을 대신하는 값은 7냥 5전이다. <5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날마다 2전 5푼씩이 규례이다. ○ 兼濟庫.> 벗짚을 대신하는 값은 7전 5푼이다. <9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날마다 2푼 5리씩이 규례이다. 本府 몫이다.> 年分紙 1속을 대신하는 값은 1냥 5전, 草白紙 1속을 대신하는 값은 1전 7푼, 黃筆 1자루를 대신하는 값은 2전, 白筆 1자루를 대신하는 값은 2푼, 참떡 2丁을 대신하는 값은 1전, 南草 2근을 대신하는 값은 5전이다. 이상은 工庫에서 낸다. 泉紙 1束을 대신하는 값은 1냥 3전, 皮紙 10장을 대신하는 값은 3전이다. 이상은 紙所에서 낸다. 松烟 30자루를 대신하는 값은 1전 5푼인데, 본부 객사의 아전이 낸다. 채소는 4개의 종류를 날마다 진배하는데<돈으로 대신하면 날마다 5푼씩이 규례이다.> 園頭漢(채소밭 가꾸는 사람)이 낸다.<참외가 나온 뒤에는 날마다 3개씩, 처서 뒤에는 수박을 날마다 1개씩 올린다.>⁴⁰⁾

「체등 때(遞等時)」의 내용은 신임과 후임 관리가 서로 교대하는 체등 때 물품과 돈을 나누어 주는 예이다.

규례로 정해진 요록 외에 심약의 중요한 수입은 약재 진상과 연관되었다. 仁祖 때에는 공을 세운 의원들을 비옥한 지역의 심약으로 임명하였고, 종9품관임에도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을 지닌 의관이 부임하기도 했다.⁴¹⁾ 하지만 선행연

구에 따르면 進上 과정에서의 모리 행위가 조선 후기 의관 계층의 재정적 뒷받침과는 관련이 적다.⁴²⁾ 다만 심약이 무록관으로서 약간의 인정은 관례상 허용되었기에 개인의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있었다.

(2) 기타 식례와 규례

「도임 후 본부에서 진배하는 식례(到任後本府進排式例)」는 도임 후에 본부의 이속들이 심약에게 물품을 바치는 예이다. 「도임 후 하인에 대한 예하 질(到任後下人例下秩)」은 도임 후 심약이 기생 및 하인들에게 주어지는 샅이다. 「2월 대령 후 하인에 대한 예하 질(二月大令後下人例下秩)」은 대령 진상 후에 본부의 기생 및 하인들에 주어지는 물품과 샅이다. 10월 대령 후에도 동일하였다. 「소령 후 하인에 대한 예하 질(小令後下人例下秩)」은 소령진상 후에 본부의 기생 및 하인들에 주어지는 물품과 샅이다. 4분기가 동일하였다. 「본당하인의 급료에 대한 질(本堂下人給料秩)」은 본당 하인에게 주어지던 급료 및 추석 등 명절에 주어지는 물품에 대한 내용이다.

「약원청 소속 및 직무를 맡은 이에 대한 응례(藥院廳中及該色應例)」는 대령 때에 내의원 관료들에게 하는 응례로서 내의원의 당상관 관원부터 장무관, 내의, 書員에게 올리는 물품이었다. 1년에 두 차례 경상감영 뿐 아니라 진상하는 모든 심약들이 응례를 하였을 것이다. 경상감영의 경우, 내의원 聽官(일반 내의)은 12명인데 각자마다 “돈 9전, 백지 2속, 북어 2두름, 대구 2마리”, 당상관 내의는 돈 1냥 1전씩과 같은 물품을 대령 때 올렸다.

「영문에서 봉여 인삼 값을 구처함에 대한 질(營門封餘蔘價區處秩)」은 대령 때 봉여 인삼 값을 변동하여 처리함에 따른 각자의 몫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본당하인 등이 2월과 10월 대령 때 봉여 고을에서 의생이 맡은 수봉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규례(本堂下人等二十月大令時封餘邑醫生處收捧分處式)」는 봉여 고을 별로 의생이 징수할 세금을 通引, 軍牢, 主人이 나누는 내용이다. 「본당의 통인이 대령

40) 糯米一石【從市直】，還米二石十二斗五升【每斗二錢式】，太十二斗，租十二斗六升，赤豆一升【以上從市直】，饌價錢四兩五錢，廣魚四尾代文一兩，明太九東代文九錢，眞末一升五合代文三分【糯米以下戶房】，甘藷一丹代文一錢三分，白鹽二升四合代文三分，眞油二升九合代文七錢三分【甘藷以下庫子】，已上營庫，朔布二疋代文六兩，【軍需庫】，柴木六十束代文三兩【每束五分式】，炭一石代文四錢【每斗二分六里式。○已上營繕】，馬草代文七兩五錢【自五月五日，以九月九日，至每日二錢五分式。○兼濟庫】，穀草代文七錢五分【自九月十日，以五月四日，至每日二分五里式。○本府】，年分紙一束代文一兩五錢，草白紙一束代文一錢七分，黃筆一柄代文二錢，白筆一柄代文八分，眞墨二丁代文一錢，南草二斤代文五錢，已上工庫，泉紙一束代文一兩三錢，皮紙一束代文三錢，已上紙所，松烟三十柄代文一錢五分，本府客舍吏，菜蔬四各色，每日進排【代錢則每日五分式】，園頭漢【眞瓜出後，每日三介，處暑後，西瓜每日一介】

41) 개인의 공적에 의한 특지로 특정 지역에 심약이 임용되는 경우는 규례가 아닌 일회성이다. 박훈평. op. cit. p. 68.

42) 심약의 임명은 대개 철저하게 취제의 순위에 의해 임명되었다. 비옥한 지역에 임용된 심약의 가계 분석에 있어서도 이는 확인된다. 박훈평. op. cit. p. 69.

때에 회소에서 받는 예추(本堂通引大令時會所例推)는 본당 통인이 4개 회소에서 받는 돈을 기록하였다. 「네 분기 소령 때에 회소에서 받는 예추(四等小令時會所例推)는 본당 통인이 소령 때에 받는 돈과 물품을 기록하였다. 「2월과 10월령 후 경노자의 응출과 예봉에 대한 질(二十月令後京奴子應出例捧秩)」은 경노자가 대령 때에 4개 회소에서 받는 돈을 기록하였다. 「2월의 백청 진상(二月白淸進上) 등」은 2월, 8월 고을별 백청 진상 내역과 10월 作木⁴³⁾의 고을별 내역이다.

이들 항목을 통해 보면 醫生이나 藥夫 등을 약재 진상과 관련하여 동원하고 샀을 지급하는 주체는 심약이다. 조선초에 이루어졌던 심약(의학교육관)의 지방의생 등에 대한 의학 교육이⁴⁴⁾ 조선 후기에도 실제 행해졌는지 유무는 불확실하지만, 심약이 지방 의약에서 차지하는 권한이 상당함은 이상의 규례들을 통해 확인된다.

(3) 재미년 관문

「癸未七月日因內醫院關申飭貢參各邑關文」은 경상감영 관련 내용의 마지막 세목으로 재미년 내의원에서 인삼을 공급하는 여러 고을을 신칙하기 위해 내린 관문으로 내의원 관문과 내의원 제조였던 金蒼根⁴⁵⁾의 相考 두 부분으로 나뉜다. 金이 내의원제조였던 기간⁴⁶⁾으로 추산하면 본문의 “재미년”은 1823년(순조 23)이다.

이 관문과 서두에 실린 완의 내용을 통해 보면 당시 인삼 진상에 있어 질을 속이는 행위가 만연했다. 『심약사례』는 다른 심약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경상심약에 관한 내용만으로도 완결된 체제이다.⁴⁷⁾ 그런데 이 내용의 처음과 끝을 약재 진상에서의 농단을 신칙하고 주의하는 완의와 관문으로 구성함은 후임 심약들이 이 부분에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여러 “경상감영” 세목 중 20항목이 약재 진상 관련된 항목이라는 점도 심약의 주소임이 약재진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김시근의 상고 뒤에 “병인년(1866, 고종3) 2월 전교로 인하여 1근을 줄였다가 계유년(1873) 12월 24일 領相(영

의정) 李裕元이 경연에서 아뢰어서 복구했다.”⁴⁸⁾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으로 인해 문헌의 작성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이는 후대에 더해진 내용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대령의 인삼 진상 관련 내용에선 원래의 2근을 기준으로 하여 고을별 분담 몫을 나열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제외하면 “경상감영” 내에서 완의의 작성 연도인 1856년(철종 7) 이후의 내용이 없다.

III. 결론

심약은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유일한 의학 관료이다. 『심약사례』는 19세기 심약의 업무 등이 실제로 어떠한지 살필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본고는 『심약사례』 문헌의 체제와 내용을 통하여 심약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하여 이전에 심약에 대하여 제기된 가설을 검증하고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문헌의 완성 연도는 1873년 12월 24일 이후이다. 다만 본문의 내용에는 19세기에 속한 작성 시기가 다른 내용들이 혼재되었다. 경상감영 관련 내용이 먼저 묶이고 다른 내용은 추가되었다.

둘째, 본문헌의 작성 주체는 전의감 소속 관원으로 추정된다. 심약을 분차하는 기관은 전의감과 혜민서 둘인데 내용 중에 전의감 위주로 기록된 표현이 등장한다.

셋째, 심약은 지방 의료에 공헌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중앙의료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이 주목적이다. 부수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고위직 관료(감사, 병사 등)의 치료 및 군의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문헌 내용의 상당부분이 약재와 물품 진상 규례와 이에 대한 급부에 관한 내용이다. 만약 심약의 소임 중에 의생교육 등이 중요했다면 이와 관련된 규례 등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는 『심약사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심약사례』는 특정시기 경상심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43) 전세를 무명으로 환산하여 들임.

44) 박훈평. op. cit. p. 67.

45) 1755-?. 본관은 안동. 김재순의 계자. 1802년 성상수도평북경과에 급제, 순조조에 이조판서를 지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DB(<http://people.aks.ac.kr>)

46) 김시근은 1814년 윤2월 약방제조로 임명된다. 『승정원일기』 순조 14년 윤2월 20일 임오 기사. “吏曹口傳政事, 以金蒼根爲內醫提調.”

47) 경상심약의 사례에 관한 내용을 모아 완성한 뒤에 다른 심약 내용들을 보충한 구성이다.

48) 丙寅二月, 仍傳教減一斤, 癸酉十二月二十四日, 領相李裕元, 筵稟復舊. 『승정원일기』 고종 3년 2월 26일과 고종 10년 12월 24일 기사에 관련 내용이 있다.

는 한계가 있다. 당대 심약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문헌의 발굴과 그에 따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무진. 「조선후기 경상감영에 관한 연구」. 학림. 2015; 36:125-179.
2. 내의원 편. 『내의원 식례』. 서울대 규장각 소장(청구번호 : 17200)
3. 문광균. 「18세기 강계지역 공삼제의 운영과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2011;57:161-206.
4.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 의사학회지. 2015;28(2):59-72.
5. 비변사 편. 조영준 역. 『시폐』. 서울:아카넷. 2013:192.
6. 전의감 편. 박훈평 역. 『역주 심약사례』. 서울:퍼플. 2015: 상 8-116, 하 8-114.
7.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서울:신서원. 2000:255-299.
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검색 DB (<http://www.nl.go.kr/nl>)
9.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http://sjw.history.go.kr>)
1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http://sillok.history.go.kr>)
1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DB(<http://people.aks.ac.kr>)